##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06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이종배·김성원·성일종

이종욱 • 정동만 • 서천호

정연욱 • 박덕흠 • 이만희

김소희 · 김용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취득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등의 범 죄가 성행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자는 의 견이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조·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 법률 제 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 게 사용한 자
- 3.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조·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벌칙) <u>&lt;신 설&gt;</u>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3.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조・변조된 주민등록		
	증등을 판매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②</u>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u>&lt;삭 제&gt;</u>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u>&lt;삭 제&gt;</u>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			
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